

[정 정 대 비 표]

■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

펀드명	(변경 전) BNK튼튼단기채증권투자신탁(채권)
	(변경 후) BNK내일환매초단기채증권투자신탁(채권)
정정서류	(간이)투자설명서
정정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펀드명 변경 - 투자대상 및 전략 관련 내용 변경 등 - 듀레이션 변경(0.9년 -> 0.5년) - BM(벤치마크) 변경(KOBI120지수*70% + Call*30% -> KIS Call * 100%) - 환매주기 단축 변경(환매주기 하루 단축) 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- 특수위험 추가
효력발생일	2025년 04월 17일

■ 정정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 사유	정정 전	정정 후
펀드명	펀드명 변경	BNK튼튼단기채증권투자신탁(채권)	BNK내일환매초단기채증권투자신탁(채권)
[요약정보]			
투자목적 및 투자전략	듀레이션, BM(벤치마크)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이 투자신탁은 단기사채 및 어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비교지수1)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. · 이 투자신탁은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잔존만기가 짧은 단기사채(ABSTB), 기업어음(CP), 회사채 등 단기채권에 집중 투자하며, 채권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은 0.9년 내외 수준을 목표로 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. · 비교지수1) : KOBI120지수*70% + Call*30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이 투자신탁은 단기사채 및 어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비교지수1)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. · 이 투자신탁은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잔존만기가 짧은 단기사채(ABSTB), 기업어음(CP), 회사채 등 단기채권에 집중 투자하며, 채권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은 0.5년 내외 수준을 목표로 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. · 비교지수1) : KIS Call * 100%
주요투자위험	특수위험 추가	(신설)	- 투자신탁 명칭에 따른 투자자 오인 발생 가능 위험: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명칭 내 '내일환매'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으나, MMF가 아닌 채권형 펀드이며

			MMF와 다르게 투자대상, 안정적 자산, 잔존만기, 유동성 비율 등 MMF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장부가 평가를 받는 MMF와 달리 시가평가를 받는 펀드이므로 편입 종목의 가격 변동 및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 등의 투자위험이 MMF 보다 큰 상품입니다.
환매방법	환매주기 단축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3영업일(D+2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·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4영업일(D+3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4영업일(D+3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2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2영업일(D+1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·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3영업일(D+2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

[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 사유	정정 전	정정 후
펀드명	펀드명 변경	BNK 튼튼단기 채증권투자신탁(채권)	BNK 내일환매초단기 채증권투자신탁(채권)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MMF와의 차이점 기재	(<u>신설</u>)	12. 이 투자신탁은 MMF와 다르게 투자대상, 안정적 자산, 잔존만기, 유동성 비율 등 MMF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, 장부가평가를 받는 MMF와 달리 시가평가를 받는 펀드이므로 편입 종목의 가격 변동 및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 등의 투자위험이 MMF보다 큰 상품입니다.

[요약정보]

투자목적 및 투자전략	듀레이션, BM(벤치마크)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이 투자신탁은 단기사채 및 어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비교지수1)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 구입니다. · 이 투자신탁은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잔존만기가 짧은 단기사채(ABSTB), 기업어음(CP), 회사채 등 단기채권에 집중 투자하며, 채권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은 <u>0.9년</u> 내외 수준을 목표로 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이 투자신탁은 단기사채 및 어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비교지수1)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 구입니다. · 이 투자신탁은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잔존만기가 짧은 단기사채(ABSTB), 기업어음(CP), 회사채 등 단기채권에 집중 투자하며, 채권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은 <u>0.5년</u> 내외 수준을 목표로 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	--

		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. · <u>비교지수1) : KOB120지수*70% + Call*30%</u>	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. · <u>비교지수1) : KIS Call * 100%</u>
주요투자위험	특수위험 추가	(신설)	- 투자신탁 명칭에 따른 투자자 오인 발생 가능 위험: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명칭 내 '내일환매'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으나, MMF가 아닌 채권형 펀드이며 MMF와 다르게 투자대상, 안정적 자산, 잔존만기, 유동성 비율 등 MMF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장부가 평가를 받는 MMF와 달리 시가평가를 받는 펀드이므로 편입 종목의 가격 변동 및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 등의 투자위험이 MMF 보다 큰 상품입니다.
환매방법	환매주기 단축 변경	·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<u>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3영업일(D+2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·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<u>4영업일(D+3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4영업일(D+3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	·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<u>2영업일(D+1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2영업일(D+1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·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<u>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3영업일(D+2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
제 1 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펀드명 변경	BNK <u>튼튼단기</u> 채증권투자신탁(채권)	BNK <u>내일환매초단기</u> 채증권투자신탁(채권)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펀드명 변경	BNK <u>튼튼단기</u> 채증권투자신탁(채권)	BNK <u>내일환매초단기</u> 채증권투자신탁(채권)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-	- 2025.04.17: 펀드명 변경(BNK튼튼단기채증권투자신탁(채권)→ BNK내일환매초단기채증권투자신탁(채권)), 투자대상 변경, 듀레이션 변경, BM(벤치마크) 변경, 환매주기 단축 변경, MMF와의 차이점 기재,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비상조치 계획 기재, 특수위험 추가
7. 집합투자기구의 목적	BM(벤치마크) 변경	이 투자신탁은 단기사채 및 어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	이 투자신탁은 단기사채 및 어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

		<p>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 구입입니다.</p> <p><u>비교지수 ^{주1)} : KOB120지수 70% + Call 30%</u></p> <p><u>주1) KOB120지수 : 잔존만기 3년 이하의 투자가능한 채권 120개 종목으로 구성된 KIS채권평가사 지수</u></p>	<p>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 구입입니다.</p> <p><u>비교지수 ^{주1)} : KIS Call * 100%</u></p> <p><u>주1) KIS Call 지수 : KIS채권평가에서 발표 하는 콜금리 수익률에 따른 지수로 콜금 리의 일일 변화를 반영하는 지수로 이 투 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듀레이션이 짧 은 단기자산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.</u></p>
<p>8.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대상</p>	<p>투자대상 변경</p>	<p>가. 투자대상</p> <p><u>① 단기사채 및 어음(50% 이상)</u> <u>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</u> <u>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(취득시 신용 평가등급이 A2- 이상)를 포함하고,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 획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</u> <u>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 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자산담 보부 기업어음(ABCP)을 포함한다), 기업 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 증서</u></p> <p><u>② 채권(단기사채 제외) (50% 미만)</u> <u>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 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 이 상이어야 하며, 주식관련사채, 사모사채 권을 포함하고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주 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 권은 제외한다.</u> <u>- 다만, 채권 및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</u></p>	<p>가. 투자대상</p> <p><u>① 채권(60% 이상. 단, 취득시 신용평가 등급이 AA- 등급 미만인 채권에의 투자 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 이하)</u> <u>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 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 이 상이어야 하며, 주식관련사채, 사모사채 권,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」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(취득시 신 용평가등급이 A2- 이상)를 포함하고, 자 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 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 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</u> <u>및 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 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 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, 취득시 신용평가 등급이 A2- 이상인 것에 한한다) (이하 " 채권"이라 한다)</u></p> <p><u>② 어음(40% 이하)</u> <u>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(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- 이상이어야 한다. 이하 "어음"이라 한다)</u></p>

		<p>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</p> <p>③ ~ ⑩ (생략)</p> <p>나. (생략)</p>	<p>③ ~ ⑩ (생략)</p> <p>나. (현행과 동일)</p>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	<p>듀레이션 변경, MMF와의 차이점 기재,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비상조치 계획 기재</p>	<p>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</p> <p>(1) 투자전략</p> <p>이 투자신탁은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잔존만기가 짧은 단기사채(ABSTB), 기업어음(CP), 회사채 등 단기채권에 집중 투자하며, 채권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은 <u>0.9년</u> 내외 수준을 목표로 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.</p> <p>[주요 투자전략] (생략)</p> <p>[초과수익 전략] (생략)</p> <p><u>(신설)</u></p> <p>(2) 위험관리 (생략)</p> <p><u>(신설)</u></p>	<p>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</p> <p>(1) 투자전략</p> <p>이 투자신탁은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잔존만기가 짧은 단기사채(ABSTB), 기업어음(CP), 회사채 등 단기채권에 집중 투자하며, 채권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은 <u>0.5년</u> 내외 수준을 목표로 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.</p> <p>[주요 투자전략] (현행과 동일)</p> <p>[초과수익 전략] (현행과 동일)</p> <p>(2) 기존 MMF와의 차이점</p> <p>- 이 투자신탁은 MMF와 다르게 투자대상, 안정적 자산, 잔존만기, 유동성 비율 등 MMF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, 장부가평가를 받는 MMF와 달리 시가평가를 받는 펀드이므로 편입 종목의 가격 변동 및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 등의 투자위험이 MMF보다 큰 상품입니다.</p> <p><u>(표 1)</u></p> <p>(3) 위험관리 (현행과 동일)</p> <p>(4)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비상조치 계획</p> <p>- 환매 및 상환 연기 등의 사유 발생 시, 집합투자규약의 환매 연기 및 상환금 지급에 관한 관련 조항에 따라 처리합니다. 또한, 채권시장이 급변하여 펀드 내 편입 자산에 대한 비상 위기대응이 필요할 경우, 당사 내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기 발생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운용담당부서는 물론, 필요시 전사 차원의 대응방안을 수립합니다.</p> <p>- 이 투자신탁은 잔존만기가 짧은 국내채권 및 기업어음, 그리고 양도성예금증서 등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매에 따른 유동성 위험은 낮은 편입니다. 또한, 당일 결제가 가능한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등을 위주로 편입하여 당일 매매를 통해 즉시 유동성 확보가 가능</p>

		나. (생략)	하도록 운용하여 투자자의 환매 청구에 대하여 원활한 대응이 가능합니다. 나. (현행과 동일)
10.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위험	특수위험 추가	가. (생략) 나. 특수위험 (<u>신설</u>) 다. ~ 라. (생략)	가. (현행과 동일) 나. 특수위험 투자신탁 명칭에 따른 투자자 오인 발생 가능 위험: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명칭 내 '내일환매'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으 나, MMF가 아닌 채권형 펀드이며 MMF 와 다르게 투자대상, 안정적 자산, 잔존만 기, 유동성 비율 등 MMF 관련 규제가 적 용되지 않고 장부가 평가를 받는 MMF와 달리 시가평가를 받는 펀드이므로 편입 종목의 가격 변동 및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 등의 투자위험이 MMF 보다 큰 상품입니다. 다. ~ 라. (현행과 동일)
11. 매입, 환매, 전환기준	환매주기 단축 변경	가. (생략) 나. 환매 (1) (생략) 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(가)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 우 ⇒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 (D+2)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3영업일(D+2)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(나)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⇒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영업일 (D+3)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(D+3)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(3) ~ (5) (생략) (6)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 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 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 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 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<u>일정한 날</u> 의 <u>전전영업일(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</u>	가. (현행과 동일) 나. 환매 (1) (현행과 동일) 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(가)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 우 ⇒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2영업일 (D+1)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2영업일(D+1)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(나)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⇒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 (D+2)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3영업일(D+2)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(3) ~ (5) (현행과 동일) (6)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 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 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 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 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<u>일정한 날</u> (<u>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</u>

		<p>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일정한 날의 전전 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p> <p>(7) ~ (9) (생략)</p> <p>다. (생략)</p>	<p>에는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p> <p>(7) ~ (9) (현행과 동일)</p> <p>다. (현행과 동일)</p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<p>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</p>	<p>가. (생략)</p> <p>나. 과세</p> <p>(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-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</p> <p>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·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의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)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 다만, <u>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</u> (이하 생략)</p> <p>(2) ~ (5) (생략)</p>	<p>가.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과세</p> <p>(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-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</p> <p>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·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의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)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 <삭제> (이하 현행과 동일)</p> <p>(2)~ (5) (현행과 동일)</p>

(표1)

	장부가 평가 MMF(법인형)	시가평가 MMF(법인형)	내일환매초단기채 펀드
투자대상	국채(5년 이내), 특수채 및 우량 신용등급(AA-이상), 회사채(1년 이내), CD 및 정기예금(6개월 이내), CP 및 단기사채(A2 이상, 1년 이내), 수익증권(MMF), Call 및 Repo 등		국채/지방채/특수채/사채권(A-이상), 단기사채(A2- 이상), CP 및 어음(A2- 이상) 및 Repo 등
안정적 자산 비율	30%이상 상시 유지	없음	없음
평가방식	장부가 평가	시가 평가	시가 평가
잔존 만기 (듀레이션)	60일 이내	120일 이내	듀레이션 0.5년 내외
유동성 비율	1영업일 유동성 10% / 7영업일 유동성 30% Repo 매도 5% 이내		Repo 매도 50% 이하
신용등급 제한	최상위 2개 등급		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A-미만)에의 투자는 자산총액의 50%이하
분산투자 규제	채권(AAA) 5% / 채권(AA) 2% CP(A1) 3% / CP(A2) 1%		동일인 한도 10%
설정/환매 주기	익영업일 설정, 익영업일 환매		

< 끝 >.